Smiling Dalseo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체육청소년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급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 전문체육 등 다양한 체육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문체육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안 각 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5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전문체육 진흥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29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협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31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시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4. 7. 11일부터 8.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4. 9.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4. 9. .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체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2. 3.)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전문체육 등 다양한 체육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2조)

○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성별 고려 정비(안 제5조)

○ 전문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

○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29조)

○ 체육단체 사전협의, 지도·감독 조항 정비(안 제30조 및 제31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4. 7. 11.~8. 1.) 결과: 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비해당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체육활동을 말하며, “생활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를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을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직 :”을 “위촉직:”으로,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1. 당연직: 문화환경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장

제3장의 제목 “생활체육의 진흥”을 “전문체육의 진흥”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4장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선수의 관리)”를 “(선수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수관리단체는 선수 추천, 보조금 집행, 선수의 지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하고, 제31조를 제32조로 하며, 제21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을 “당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직 :”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30조 앞에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6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체육단체 등 지원

제2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4조 중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하며, “생활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를 말한다.	3. ---------- ---------- ----------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삭 제>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설치) 법 제5조---------- ---------- ---------- ---------- ---------- ----------.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1. 당연직 : 문화환경국장, 구 생활체육회장	1. 당연직: 문화환경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장
2. 위촉직 : 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생활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촉직: ---------- ----- 체육단체---------- ---------- ---------- --
제3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3장 전문체육의 진흥
<신 설>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구청

	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 --- 체육단체 ----------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삭 제>
<신 설>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따른 ----------.
제16조(선수선발) 제15조의 선수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23조에 따른 위원	제16조(선수선발) ---------- ------- 제22조----------

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
1.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1. ------ 규모 이상--------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8조(선수의 관리) (생 략)	제18조(선수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선수관리단체는 선수 추천, 보조금 집행, 선수의 지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선수관리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 및 선수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선수관리단체는 선수 추천, 보조금 집행, 선수의 지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22조·제23조 (생 략)	제21조·제22조 (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1. 당연직 : 문화환경국장	1. 당연직: ----------
2. 위촉직 : 구의회 의원, 장애인 복지 및 체육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위촉직: ---------- ---------- ---------- ----------
<신 설>	제2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25조 ~ 제29조 (생 략)	제24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6장 체육단체 등 지원
제3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보 칙
제31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34조(준용)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4조(준용) ---------- ----------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

【 관 계 법 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개선과제 요약(2019. 8. 5. 의결)

1. 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①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 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관련 규칙(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 마련

② 체육회의 행정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또는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관리책임 명확화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①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규정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3. 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①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